

의안번호	2207687
의 퇴 인	고동진 의원
회 답 일	2025.04.16.
추 계 번호	25C04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7,000만원(연평균 1,4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70	-	-	-	-	70	14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23조의3 (직업교육의 보장 등)	(제2항)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3	안 제61조의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특례)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61조의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특례)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 (산학겸임교사 등)	—	(제2항)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학겸임교사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유발하지 않음
		×	(제3항)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함 ·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이루어질 지원의 구체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 참고로, 교육부는 '24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과 개편 지원 사업으로 4개 학교 각 3억원씩 총 12억원을 교부하였고, '25년에도 사업 운영으로 5억원을 교부할 예정임
2	안 제23조의3 (직업교육의 보장 등)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3	안 제61조의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특례)	×	(제1항)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 지원하여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61조의2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특례)	×	· 참고로, '24년 교육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 학교 지원, 발전지원금, 학과 개편 지원 등 총 127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한 바 있음 · 아울러 해당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25년 총 120억원을 편성할 예정임 [참고자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현황
		×	(제2항)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홍보 시책 개발·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 발생할 수 있으나 홍보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추가재정산출이 곤란함 · 참고로,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 위탁을 통해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매년 17억 5,000만원이 투입됨 · 해당 사업은 권역별 거점학교를 통해 미취업·진로 미결정 직업계고 졸업생을 지원하고, 자료집 발간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을 수행함 · 아울러 교육부는 '23년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하여 직업교육 인식 개선을 위한 마이스터고 멘토단 500명을 발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곤란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추계서에서는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 제23조의3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
- 개정안에 따라 5년 주기로 계획 수립 비용이 지출된다고 가정하고,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
 -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호제2호가목의 산업교육기관에 해당하여 동 법령의 적용 대상임¹⁾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동법 제5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는 산업교육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등이 포함되므로 해당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비용을 준용함
- 참고로,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19~'23년) 수립된 바 있으며,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24~'28년) 연구용역이 '23년 5월 발주되어 '24년 1월 25일 발표됨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제2차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7,000만원(연평균 1,400만원)으로 추계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은 '23.4.10.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정책연구용역과제로 공모하였으며 연구비 7,000만원이 책정되었으므로 이를 준용함

[표 2]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비용 추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안 제23조의3제2항)	70	-	-	-	-	70	14

주: 유사사례를 준용한 것으로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IV. 부대의견

-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한 것이므로 개정안 시행 후 구체적 내용 및 구성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경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교)

시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학교 수	59	5	4	5	2	2	2	3	0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 수	3	3	3	6	4	4	9	4	0

주: 57개교가 운영 중이며, 2개교는 '26년부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운영될 예정임
자료: 교육부, 2024.10.